

군산시 모자자립시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산시장

본 동 인



2014년 11월 3일

전라북도 군산시 훈령 제314호

## 군산시 모자자립시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모자자립시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모자가족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모자가족복지시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모자가족복지시설”을 “모자가족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있어서는 시설”로, “모자가족복지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기한내”를 “기한”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입소자의 입소기간”을 “입소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4”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5”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입소자가”를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보호기간이 만료된 사람

제7조제1항제3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입소자가 운영”을 “운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입주한 자”를 “입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분내”를 “부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모자보호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u>모자가족복지시설</u>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br><u>모자가족복지시설</u> -----<br>-----<br>-----<br>-.                                   |
| 제2조(설치 기준) ① <u>시설의 설치</u> 에 있어서는 <u>모자가족복지시설</u> 의 설치기준에 준하며 기존의 <u>모자가족복지시설</u> 을 병설 운영할 때에는 시설물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2조(설치 기준) ① <u>모자가족복지시설</u>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있어서는 <u>시설</u> -----<br><u>시설</u> -----<br>-----<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4조(입소 절차) ①·② (생략)                                                                                                      | 제4조(입소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입소대상자로 결정된 <u>자</u> 가 입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입소 <u>기한내</u> 에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소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소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입주기간 15일이내) | ③ ----- <u>사람이</u> -----<br>-----<br>----- <u>기한</u> -----<br>-----<br>-----.                             |
| 제5조(입소 기간) <u>입소자의 입소 기간</u>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이내로 한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 제5조(입소 기간) <u>입소기간</u> -----<br>-----<br>-----.                                                           |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5 --                                                                            |

의4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퇴소) ① 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보호기간이 만료된 자
2. (생 략)
3. 퇴거후 자력으로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다고 능력이 인정  
되는 자
4. 입소자가 운영 규정을 지키  
지 아니하여 시설운영에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자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자

제10조(입소자 부담금) ① 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설측에서 부담하되 주거전용 부  
분내의 사용으로 인한 비용은  
입소자가 공동 부담한다.

②·③ (생 략)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시설  
에 대하여 시장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

-----  
-----  
-----.

제7조(퇴소)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 해당  
하는 사람-----  
-----.

1. 보호기간이 만료된 사람
2. (현행과 같음)
3. -----  
----- 인정되는 사  
람
4. 운영-----  
-----  
----- 인정되는 사람
5. ----- 입  
주한 사람

제10조(입소자 부담금) ① -----  
-----  
----- 부분-----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  
-----  
-----  
-----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해당지역의 모자보호시설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규정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  
----- 따라-----  
-----.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4년 11월 3일

전라북도 군산시 훈령 제315호

##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신규센터의 위탁심사, 위탁의 취소 여부,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7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강가정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2. 건강가정지원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⑤ 운영 위탁을 신청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제척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심사사안이 있을 때 구성하고, 수탁 심사 선정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기준 및 심사방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탁응모자가 위탁 사업설명회를 통해 직접 참여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심의한다.

③ 수탁자 선정시에는 다음 각 회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응모자의 사업수행능력·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필수사항: 수탁기관의 재정능력,공신력,사업수행능력,가족관련 사업 추진실적,운영계획의 적정성,센터장 및 직원 자력의 적정성

2. 임의사항: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수탁자의 선정) 제5조의 선정기준에 따라(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계약의 체결) ① 위탁기관은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을 위한 약정서에는 위탁의 목적,시설 및 위탁사업,위탁기관,위탁기간,사무실의 위치,수탁자의 의무,운영인력,감독,약정해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양자 간 서명·날인 후 보관한다.

제8조(위탁기간) 위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갱신) ① 위탁기간은 위탁기간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 제7조에 따라 정한 약정해지 사유 등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8조의 위탁기간 내에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공고 제2014-1564호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대한 행정처분 규칙』과 『군산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칙』 폐지 계획이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10. 23.

## 군 산 시 장

###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대한 행정처분규칙』 『군산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1. 폐지이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14. 07. 29일자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되면서 세부적인 행정처분 규정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대한 행정처분 규칙」의 존재 이유가 상실되어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며,
-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제정(1997.06.16)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2005.12.07)되면서 과태료부과 근거 조항인 제144조 제2항 제2호가 삭제되고, 이것이 이행강제금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군산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칙」의 존재 이유가 상실되어 해당 규칙을 폐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대한 행정처분규칙」과 「군산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3. 의견제출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대한 행정처분규칙」과 「군산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칙」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분은 2014년 11월 14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1층 토지정보과), 우) 573-703

(전화 063-454-3952, 팩스 063-452-6929, 전자우편 : k153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계(전화 063-454-3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 폐지안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규칙 제 호

## 군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안

군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입법예고 제2014 -1608호

「군산시 공약사업 관리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장

2014년 10월 일

## 군산시 공약사업 관리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 법규명 : 군산시 공약사업 관리규칙안

2. 제정이유

- 시장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 제정내용

- 공약사업 관리체계(안 제3조 내지 제5조)
  -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약사업자문평가단과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하여 규정
- 공약사업 실행계획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규정
- 공약사업 실행계획의 이행 및 평가(안 제8조 내지 제10조)
  - 실행계획의 이행,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에 관하여 규정

####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60-761 / 전북 군산시 조촌동 888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 : 063-454-2303, FAX 063-452-8157)

#####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방문 ·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소영(전화 : 063-454-23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군산시 공약사업 관리규칙안 1부

# 군산시 공약사업 관리 규칙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업”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군산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공약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관리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추진부서”란 공약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2장 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시장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자치행정국장이 하고, 기획예산과장이 보좌한다.

②기획예산과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로 추진부서를 지정한다.

③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며, 업무담당 계장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공약사업 이행평가단) ①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이행평가단(이하 “이행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이행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시민을 대상으로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③평가단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이행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실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2. 공약사업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제시

⑤이행평가단은 연 1회 이상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⑥이행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시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⑧평가단 운영은 『군산시 희망등대 시민토론단』이 대행할 수 있다.

### 제3장 공약사업 실행계획 수립

제5조(실행계획 수립) ①추진부서의 장은 시의 재정상황,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총괄 관리하며, 누리집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②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2. 실행계획의 총괄개요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4. 추진계획

③추진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 및 이행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행계획 변경) ①실행계획을 확정된 이후 정책변경,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추진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실천계획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요예산 조치) 예산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을 실행계획 속에 포함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와 사전협의·조정하여야 한다.

#### 제4장 실행계획 이행 및 평가

제8조(실행계획 이행)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실행계획을 적극 추진한다.

제9조(자체평가) ①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의 경우 주관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10조(외부평가) ①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 평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②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4-111호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관광진흥과 454-334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10월 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금동 12-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나. 명 칭 : 해망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구분  | 시 설 명   | 시 설 결 정               |                     | 실시계획인가              | 비 고 |
|-----|---------|-----------------------|---------------------|---------------------|-----|
|     |         | 위 치                   | 면적(m <sup>2</sup> ) | 면적(m <sup>2</sup> ) |     |
| 주차장 | 주차장 83호 | 군산시 금동 12-7<br>외 18필지 | 1,872.6             | 1,738.6             |     |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관광진흥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5.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제제실음생략
8. 관계도서 : 제제실음 생략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br>(㎡) | 편입면적<br>(㎡) | 소유자    | 주소 | 비고           |
|-----|-------|-------|----|-------------|-------------|--------|----|--------------|
| 합 계 |       |       |    | 1,738.6     | 1,738.6     |        |    |              |
| 1   | 군산시금동 | 12-7  | 대  | 79.3        | 79.3        | 군산시    |    |              |
| 2   | 군산시금동 | 12-8  | 대  | 49.6        | 49.6        | 군산시    |    |              |
| 3   | 군산시금동 | 12-9  | 대  | 82.6        | 82.6        | 군산시    |    |              |
| 4   | 군산시금동 | 12-10 | 대  | 49.6        | 49.6        | 군산시    |    |              |
| 5   | 군산시금동 | 12-11 | 대  | 46.3        | 46.3        | 군산시    |    |              |
| 6   | 군산시금동 | 12-12 | 대  | 95.9        | 95.9        | 군산시    |    |              |
| 7   | 군산시금동 | 12-13 | 대  | 115.7       | 115.7       | 군산시    |    |              |
| 8   | 군산시금동 | 12-14 | 임  | 221.5       | 221.5       | 군산시    |    | 69.4㎡는국(재무부) |
| 9   | 군산시금동 | 12-15 | 대  | 95.9        | 95.9        | 군산시    |    |              |
| 10  | 군산시금동 | 12-16 | 대  | 79.3        | 79.3        | 군산시    |    |              |
| 11  | 군산시금동 | 12-17 | 대  | 105.8       | 105.8       | 군산시    |    |              |
| 12  | 군산시금동 | 12-18 | 대  | 16.5        | 16.5        | 국(재무부) |    |              |
| 13  | 군산시금동 | 12-19 | 대  | 79.3        | 79.3        | 군산시    |    |              |
| 14  | 군산시금동 | 12-20 | 대  | 109.1       | 109.1       | 군산시    |    |              |
| 15  | 군산시금동 | 12-22 | 대  | 251.2       | 251.2       | 군산시    |    |              |
| 16  | 군산시금동 | 12-23 | 대  | 72.7        | 72.7        | 군산시    |    |              |
| 17  | 군산시금동 | 12-24 | 도  | 26.4        | 26.4        | 국(재무부) |    |              |
| 18  | 군산시금동 | 12-25 | 대  | 79.3        | 79.3        | 군산시    |    |              |
| 19  | 군산시금동 | 12-25 | 대  | 82.6        | 82.6        | 군산시    |    |              |

고시 제2014-114호

##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4. 10. 20

군산시장 (인)

|           |                         |         |      |
|-----------|-------------------------|---------|------|
|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1번지       |         |      |
| 성명(법인명)   | 에스케이텔레콤(주)              |         |      |
| 하 천 명 칭   | 경포천                     | 하 천 등 급 | 지방하천 |
| 점 용 장 소   |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672번지외 1필지 |         |      |
| 점 용 목 적   | 통신주 설치                  |         |      |
| 점 용 면 적   | 2.26㎡                   |         |      |
| 최 초 허 가 일 | 2014년 10월 20일           |         |      |
| 점 용 기 간   | 2014년 10월 허가일로부터 ~ 5년   |         |      |

군산시 고시 제 2014 - 115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0. 21.

##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2차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변경)
  - 1) 명 칭 : (주)문장건설
  - 2) 대표자 : 장치성
  - 3)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밀재로 1278-1번지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6번지, 1-40번지
  - 나. 주택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
  - 나. 대지면적 : 9,222.1000m<sup>2</sup>
  - 다. 건축면적 : 1,752.8936m<sup>2</sup>
  - 라. 연 면 적 : 21,859.4153m<sup>2</sup>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3동 13~18층, 175세대
    - 전용 59.9896m<sup>2</sup> 146세대
    - 전용 59.9845m<sup>2</sup> 29세대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 사업비 : 24,817,000천원
  - 아. 사업기간 : 2013. 01. ~ 2014. 12.
4. 주요 변경사항
  - ▶ 대지면적 변경 : 당초 9,213.00m<sup>2</sup> → 변경 9222.10m<sup>2</sup>
  - ▶ 기타 : 조경 및 부대시설 옹벽등 기타 사항 경미한 변경
5. 설계도서 : 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4 - 116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0. 21.

##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미장지구 A3블럭 제일풍경채아파트
2. 사업주체 (**변경없음**)
  - 가. 토지 소유자
    - 1) 명 칭 : (주)영우홀딩스
    - 2) 대표자 : 유 미 정
    - 3)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2, 에스케이허브블루 1507호
  - 나. 등록사업자(공동사업주체)
    - 1) 명 칭 : 제일건설(주)
    - 2) 대표자 : 유 재 훈
    - 3) 주 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38-13, 3층
3. 사업내용 (**변경없음**)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미장지구 A3블럭
  - 나. 주택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기간 10년)
  - 나. 대지면적 : 38,911.0000m<sup>2</sup>
  - 다. 건축면적 : 7,535.6133m<sup>2</sup>
  - 라. 연 면 적 : 130,622.3894m<sup>2</sup>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9동 20~25층, 871세대
    - 전용 79.1975m<sup>2</sup> 150세대
    - 전용 84.9038m<sup>2</sup> 571세대
    - 전용 84.3536m<sup>2</sup> 150세대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 업 비 : 204,618,672천원

아. 사업기간 : 2013. 12. ~ 2016. 03.

4. 사업계획변경 내용 : 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4년 10월 21일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4 -117 호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10월 31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24-2번지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나. 명 칭 : 남성환경 부지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 구 분         | 시설명             | 결 정(m <sup>2</sup> ) | 실시계획(m <sup>2</sup> ) | 비 고                             |
|-------------|-----------------|----------------------|-----------------------|---------------------------------|
| 폐기물<br>처리시설 | 건설폐기물<br>중간처리시설 | 47,188               | 47,188                | 사업구역내 부지<br>조성을 위한 절토<br>및 정지작업 |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가. 주소 :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24-2
  - 나. 성명 : (주)남성환경 대표 이충기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2013. 11. 22 ~ 2014. 8. 31

변 경 2013. 11. 22 ~ 2015. 5.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게재실음 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 2014- 118 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1. 3

## 군 산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군산시 개정면 번영로 664-67번 외 33건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br>고시일 | 도로명주소<br>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 별 도 열 랐 |       |            |              |          |

○ 도로명주소 변경 : 군산시 대야면 번영로 912번 외 10건

| 지번주소    | 폐지된<br>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주소<br>고시일 | 도로명<br>부여사유 |
|---------|--------------|---------|--------------|-------------|
| 별 도 열 랐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4 - 5호

## 군산시 금연구역 지정(안) 행정 예고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군산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사전에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인)

### 1. 지정취지

많은 시민이 모이고 이용하는 월명공원 및 은파호수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행정예고기간 : 2014. 10. 21 ~ 2014. 11. 10(21일간)

3. 행정예고 방법 :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대

### 4.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안)

| 연번 | 지정장소                         | 범 위                   | 면 적                     | 위 치                                 | 비 고                                         |
|----|------------------------------|-----------------------|-------------------------|-------------------------------------|---------------------------------------------|
| 1  | 월명공원                         | 전지역                   | 2,587,400m <sup>2</sup> | 월명동, 나운동,<br>소룡동, 문화동 일원            |                                             |
| 2  | 은파호수공원                       | 전지역                   | 2,595,795m <sup>2</sup> | 나운동, 지곡동,<br>미룡동, 옥구읍 일원            |                                             |
| 3  | 유치원 · 초 ·<br>중 · 고교<br>115개소 | 학교절대<br>정화구역<br>50m이내 |                         | 학교출입문에서<br>직선거리 50m이내<br>(학교절대정화구역) | 유치원 24<br>초교 59<br>중교 19<br>고교 12<br>특수학교 1 |

나.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15. 1. 1.

다. 제도기간 : 2015. 1. 1 ~ 6. 30(6개월간)일까지

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15년 7월 1일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5.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보건소 건강관리과장)에게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 : (우573-35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생활계

(2) 전화 : 063-460-3263/ 팩스 063-468-4763

다) 2014. 11. 10일내 의견서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붙임 :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1부.

군산시 공고 제2014 - 1543호

##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1

## 군 산 시 장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4. 11. 1.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14. 11. 1.
3.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2점)

| 관수부서  | 공 인 명        | 인 영                                                                                  | 재료 | 등록사유             |
|-------|--------------|--------------------------------------------------------------------------------------|----|------------------|
| 토지정보과 | 군산시지적재조사위원회인 |  | 목각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       | 군산시경계결정위원회인  |  | 목각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군산시 공고 제2014-1574호

## 임대조건(변경)신고 공고

201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 임대주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임대조건(변경)신고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10. 24.

## 군 산 시 장

공고기간 : 2014. 10. 24. ~ 2014. 10. 31.

## 1.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길 76

|       |                                  |              |
|-------|----------------------------------|--------------|
| 임대사업자 | 성명(대표자) 한성건설 대표이사 송용*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상호 한성건설 주식회사                     | 전화번호         |
|       | 주소(사무소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 |              |

|       |                        |                                                  |                         |
|-------|------------------------|--------------------------------------------------|-------------------------|
| 임대 주택 |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길 76 |                                                  |                         |
|       | 임대주택의 종류               | 10년 임대 [○], 5년 임대 [ ], 매입임대 [ ]                  | 토지임대부 임대 [ ], 준공공임대 [ ] |
|       | 임대주택의 유형               | 아파트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 ], 오피스텔 [ ] |                         |

|       | 세대수                        |     |            | 표준임대조건     |         | 전환임대조건<br>(실제 임대조건) |        | 비고     |
|-------|----------------------------|-----|------------|------------|---------|---------------------|--------|--------|
|       | 구분                         | 세대  | 세대당 대출금    | 임대보증금      | 임대료(월)  | 임대보증금               | 임대료(월) |        |
| 임대 조건 | 35.4192<br>m <sup>2</sup>  | 120 | 28,500,000 | 18,610,000 | 308,000 | 불임참조                |        | (변경 전) |
|       |                            |     |            | 19,019,420 | 314,770 |                     |        |        |
|       | 59.9370A<br>m <sup>2</sup> | 652 | 46,500,000 | 32,410,000 | 521,000 |                     |        | (변경 후) |
|       |                            |     |            | 33,123,020 | 532,460 |                     |        |        |
|       | 59.9567B<br>m <sup>2</sup> | 40  | 46,500,000 | 32,010,000 | 517,000 |                     |        | (변경 전) |
|       |                            |     |            | 32,714,220 | 528,370 |                     |        |        |
|       | 59.9519C<br>m <sup>2</sup> | 80  | 46,500,000 | 32,470,000 | 521,000 |                     |        | (변경 후) |
|       |                            |     |            | 33,184,340 | 532,460 |                     |        |        |
|       | 합 계                        | 892 |            |            |         |                     |        |        |
|       |                            |     |            |            |         |                     |        |        |

## 붙임참조

(단위:원)

| 형별                 | 층별    | 세대수 | 변경전        |         | 변경후        |         | 비고 |
|--------------------|-------|-----|------------|---------|------------|---------|----|
|                    |       |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
| 35.4192㎡<br>(35형)  | 1층    | 6   | 5,110,000  | 337,260 | 5,212,200  | 344,000 |    |
|                    |       |     | 12,264,000 | 306,600 | 12,509,280 | 312,730 |    |
|                    |       |     | 32,704,000 | 163,520 | 33,358,080 | 166,790 |    |
|                    |       |     | 54,166,000 | 0       | 55,249,320 | 0       |    |
|                    | 2~3층  | 12  | 5,110,000  | 357,700 | 5,212,200  | 364,850 |    |
|                    |       |     | 15,330,000 | 306,600 | 15,636,600 | 312,730 |    |
|                    |       |     | 34,748,000 | 163,520 | 35,442,960 | 166,790 |    |
|                    |       |     | 56,210,000 | 0       | 57,334,200 | 0       |    |
|                    | 4~기준층 | 102 | 7,154,000  | 357,700 | 7,297,080  | 364,850 |    |
|                    |       |     | 18,396,000 | 306,600 | 18,763,920 | 312,730 |    |
|                    |       |     | 29,127,000 | 204,400 | 29,709,540 | 208,480 |    |
|                    |       |     | 37,814,000 | 163,520 | 38,570,280 | 166,790 |    |
|                    |       |     | 59,276,000 | 0       | 60,461,520 | 0       |    |
| 59.9370㎡<br>(59A형) | 1층    | 32  | 6,132,000  | 541,660 | 6,254,640  | 552,490 |    |
|                    |       |     | 18,396,000 | 511,000 | 18,763,920 | 521,220 |    |
|                    |       |     | 32,704,000 | 408,800 | 33,358,080 | 416,970 |    |
|                    |       |     | 52,633,000 | 255,500 | 53,685,660 | 260,610 |    |
|                    |       |     | 59,276,000 | 235,060 | 60,461,520 | 239,760 |    |
|                    | 2~3층  | 68  | 83,804,000 | 0       | 85,480,080 | 0       |    |
|                    |       |     | 8,176,000  | 541,660 | 8,339,520  | 552,490 |    |
|                    |       |     | 20,400,000 | 511,000 | 20,808,000 | 521,220 |    |
|                    |       |     | 35,770,000 | 408,800 | 36,485,400 | 416,970 |    |
|                    |       |     | 55,699,000 | 255,500 | 56,812,980 | 260,610 |    |
|                    | 기준층   | 552 | 62,342,000 | 235,060 | 63,588,840 | 239,760 |    |
|                    |       |     | 77,672,000 | 61,320  | 79,225,440 | 62,540  |    |
|                    |       |     | 86,870,000 | 0       | 88,607,400 | 0       |    |
|                    |       |     | 10,220,000 | 541,660 | 10,424,400 | 552,490 |    |
|                    |       |     | 22,484,000 | 511,000 | 22,933,680 | 521,220 |    |
| 59.9567㎡<br>(59B형) | 1층    | 2   | 38,836,000 | 408,800 | 39,612,720 | 416,970 |    |
|                    |       |     | 52,633,000 | 255,500 | 53,685,660 | 260,610 |    |
|                    |       |     | 65,408,000 | 235,060 | 66,716,160 | 239,760 |    |
|                    |       |     | 80,738,000 | 61,320  | 82,352,760 | 62,540  |    |
|                    |       |     | 89,936,000 | 0       | 91,734,720 | 0       |    |
|                    | 2~3층  | 4   | 6,132,000  | 541,660 | 6,254,640  | 552,490 |    |
|                    |       |     | 18,396,000 | 511,000 | 18,763,920 | 521,220 |    |
|                    |       |     | 32,704,000 | 408,800 | 33,358,080 | 416,970 |    |
|                    |       |     | 52,633,000 | 255,500 | 53,685,660 | 260,610 |    |
|                    |       |     | 59,276,000 | 235,060 | 60,461,520 | 239,760 |    |
|                    | 기준층   | 34  | 83,804,000 | 0       | 85,480,080 | 0       |    |
|                    |       |     | 8,176,000  | 541,660 | 8,339,520  | 552,490 |    |
|                    |       |     | 20,400,000 | 511,000 | 20,808,000 | 521,220 |    |
|                    |       |     | 35,770,000 | 408,800 | 36,485,400 | 416,970 |    |
|                    |       |     | 55,699,000 | 255,500 | 56,812,980 | 260,610 |    |
| 59.9519㎡<br>(59C형) | 1층    | 4   | 62,342,000 | 235,060 | 63,588,840 | 239,760 |    |
|                    |       |     | 77,672,000 | 61,320  | 79,225,440 | 62,540  |    |
|                    |       |     | 86,870,000 | 0       | 88,607,400 | 0       |    |
|                    |       |     | 10,220,000 | 541,660 | 10,424,400 | 552,490 |    |
|                    |       |     | 22,484,000 | 511,000 | 22,933,680 | 521,220 |    |
|                    | 2~3층  | 8   | 38,836,000 | 408,800 | 39,612,720 | 416,970 |    |
|                    |       |     | 52,633,000 | 255,500 | 53,685,660 | 260,610 |    |
|                    |       |     | 65,408,000 | 235,060 | 66,716,160 | 239,760 |    |
|                    |       |     | 80,738,000 | 61,320  | 82,352,760 | 62,540  |    |
|                    |       |     | 89,936,000 | 0       | 91,734,720 | 0       |    |
|                    | 기준층   | 68  | 6,132,000  | 541,660 | 6,254,640  | 552,490 |    |
|                    |       |     | 18,396,000 | 511,000 | 18,763,920 | 521,220 |    |
|                    |       |     | 32,704,000 | 408,800 | 33,358,080 | 416,970 |    |
|                    |       |     | 52,633,000 | 255,500 | 53,685,660 | 260,610 |    |
|                    |       |     | 59,276,000 | 235,060 | 60,461,520 | 239,760 |    |

## 2.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54

|       |                                           |                                                    |            |                         |              |                     |         |        |
|-------|-------------------------------------------|----------------------------------------------------|------------|-------------------------|--------------|---------------------|---------|--------|
| 임대사업자 | 성명(대표자) 황의*                               |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 상호 (유)송정건설                                |                                                    |            |                         | 전화번호         |                     |         |        |
|       | 주소(사무소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 (진북동)   |                                                    |            |                         |              |                     |         |        |
| 임대 주택 |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54 (조촌동, 군산타워써미트아파트) |                                                    |            |                         |              |                     |         |        |
|       | 임대주택의 종류                                  | 10년 임대 [ ], 5년 임대 [ √ ], 매입임대 [ ]                  |            | 토지임대부 임대 [ ], 준공공임대 [ ] |              |                     |         |        |
|       | 임대주택의 유형                                  | 아파트 [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 ], 오피스텔 [ ] |            |                         |              |                     |         |        |
| 임대 조건 | 세대수                                       |                                                    |            | 표준임대조건                  |              | 전환임대조건<br>(실제 임대조건) |         | 비고     |
|       | 구분                                        | 세대                                                 | 세대당 대출금    | 임대보증금                   | 임대료(월)       | 임대보증금               | 임대료(월)  |        |
|       | 59.9438㎡                                  | 74                                                 | 41,000,000 | 37,316,168              | 371,415      | 61,431,300          | 205,800 | (변경 전) |
|       |                                           | 25                                                 |            |                         |              | 62,370,000          | 200,000 |        |
|       |                                           | 12                                                 |            |                         |              | 76,454,700          | 113,190 |        |
|       |                                           | 7                                                  |            |                         |              | 76,970,000          | 110,000 |        |
|       |                                           | 74                                                 |            |                         |              | 62,721,350          | 210,120 | (변경 후) |
|       |                                           | 25                                                 |            |                         |              | 64,360,850          | 200,000 |        |
|       |                                           | 12                                                 |            |                         |              | 78,060,240          | 115,560 |        |
|       |                                           | 7                                                  |            |                         |              | 78,960,960          | 110,000 |        |
|       | 84.9622㎡                                  | 170                                                | 61,000,000 | 50,797,649              | 579,387      | 83,626,830          | 308,700 | (변경 전) |
|       |                                           | 28                                                 |            |                         |              | 85,100,000          | 300,000 |        |
|       |                                           | 42                                                 |            |                         |              | 102,900,000         | 195,510 |        |
|       |                                           | 16                                                 |            |                         |              | 103,830,000         | 190,000 |        |
|       |                                           | 170                                                |            |                         |              | 85,382,990          | 315,180 | (변경 후) |
|       |                                           | 28                                                 |            |                         |              | 87,959,440          | 300,000 |        |
|       |                                           | 42                                                 |            |                         |              | 105,060,900         | 199,610 |        |
|       |                                           | 16                                                 |            |                         |              | 106,689,570         | 190,000 |        |
|       | 84.9940㎡                                  | 116                                                | 61,000,000 | 50,850,560              | 579,668      | 83,626,830          | 308,700 | (변경 전) |
|       |                                           | 16                                                 |            |                         |              | 85,100,000          | 300,000 |        |
|       |                                           | 17                                                 |            |                         |              | 102,900,000         | 195,510 |        |
|       |                                           | 7                                                  |            |                         |              | 103,830,000         | 190,000 |        |
|       |                                           | 116                                                |            |                         |              | 85,382,990          | 315,180 | (변경 후) |
|       |                                           | 16                                                 |            |                         |              | 87,959,440          | 300,000 |        |
|       |                                           | 17                                                 |            |                         |              | 105,060,900         | 199,610 |        |
|       |                                           | 7                                                  |            |                         |              | 106,689,570         | 190,000 |        |
|       | 84.9126㎡                                  | 108                                                | 61,000,000 | 51,533,909              | 583,679      | 84,655,830          | 308,700 | (변경 전) |
|       |                                           | 22                                                 |            |                         |              | 86,130,000          | 300,000 |        |
|       |                                           | 31                                                 |            |                         |              | 103,929,000         | 195,510 |        |
|       |                                           | 11                                                 |            |                         |              | 104,860,000         | 190,000 |        |
|       |                                           | 108                                                |            |                         |              | 86,433,600          | 315,180 | (변경 후) |
|       |                                           | 22                                                 |            |                         |              | 89,011,070          | 300,000 |        |
|       |                                           | 31                                                 |            |                         |              | 106,111,500         | 199,610 |        |
|       |                                           | 11                                                 |            |                         |              | 107,741,200         | 190,000 |        |
|       | 합 계                                       | 702                                                |            |                         |              |                     |         |        |

군산시 공고 제 2014 - 1578 호

**군산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공청회 개최 취소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4-1494호(2014.10.15)로 공고한 군산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안내 공고를 취소합니다.

2014 년 10 월 31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14-1600호

## 도시계획시설(시장:원예공판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시장:원예공판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10월 31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수송동 24-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시장:원예공판장)

나. 명 칭 : 시장(원예공판장)판매시설 증축공사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면적.규모

| 구 분 | 시설명   | 결정(㎡)  | 실시계획인가    |              | 비 고           |
|-----|-------|--------|-----------|--------------|---------------|
|     |       |        | 기시행 면적(㎡) | 금회시행면적(㎡)    |               |
| 시장  | 원예공판장 | 28,039 | 18,860    | 연면적 1,387.75 | 판매시설<br>1동/3층 |
| 계   |       | 28,039 | 18,860    | 1,387.75     |               |

4.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주 소 : 군산시 수송동 24-13번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 명 : 군산원예농업협동조합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실시계획인가일 2013 .7. 12 ~ 2014. 10. 30.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